

II.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efined Contribution)

1. 의의

회사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를 말한다.

2. 회계처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기여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급여총당금 및 퇴직연금미지급금은 인식하지 아니한다.

즉 DC의 경우에는 퇴직급여해당액 100%를 사외에 적립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실지 퇴직시 추가불입해당액은 14일 이내에 회사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적립금운용결과 증가된 금액도 종업원에게 귀속되므로 이는 퇴직후 퇴직소득 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차) 퇴직급여(비용)	×××	(대) 현금 및 현금등가물	×××
지급수수료	×××		

3. 법인세법상 처리

당기의 퇴직급여지급으로 보아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

만일 전기분까지 소급해서 DC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전기까지 퇴직급여총당금으로 손금산입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손금산입된다.

퇴직보험료·퇴직연금 등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총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총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법칙 24 ①)

상기 내용에서 퇴직급여총당금의 누적액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총당금으로서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법칙 31 ②)

1.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총당금의 누적액
2.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한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중 당해 사업연도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한 경우에 퇴직금

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4. 소득세법상 처리

(1) 일시금을 선택한 경우

적립금의 운용수익까지 포함하여 전액 퇴직소득에 해당되어 DC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이때 회사는 DC연금사업자에게 근로자퇴직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즉, DC와 IRA에 있어서는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DC와 IRA의 연금운용사업자가 되는 것이다.(소령 203 ⑤)

DC제도에서는 중도인출이 특정사유시 허용되는데 이는 중간정산에 해당되어 퇴직소득의 원천징수가 발생된다. 중도인출은 전액 또는 일부가 가능한데 퇴직소득원천징수에 있어서는 중도인출시점까지 기간을 근속연수공제로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2) 연금을 선택한 경우

연금소득에 해당되어 DC연금사업자가 연금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3) 타회사의 DC로의 이체나 IRA로의 입금을 신청한 경우

- ① 과세이연에 해당되어 퇴직소득 등으로 보지 않는다.
- ② 퇴직자는 DC연금사업자에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DC연금사업자는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와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타회사 DC연금사업자 또는 IRA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DC연금사업자는 퇴사일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③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제 신설법인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가입시

1. 자료 I

- (1) 승수(주)는 2005. 12. 1. 신설됨.(회계연도는 1. 1부터 12. 31까지임)
- (2) 2005. 12. 1. A, B, C가 승수(주)에 입사함
- (3) 2006년도에 승수(주)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기로 노사합의함
- (4) 승수(주)는 윤중보험(주)를 연금사업자로 선정하였다.
- (5) 퇴직연금규약에 퇴직연금부담금은 퇴직급여추계액의 100%를 승수(주)가 윤중보험(주)에 불입하기로 하였다.
- (6) 승수(주)가 부담하는 윤중보험(주)에 대한 수수료율은 1.5%이다.

2. 자료 II

(1) 2006. 12. 31. 현재 퇴직급여추계액

A : 2,000,000

B : 3,000,000

C : 5,000,000

10,000,000

(2) 2006. 12. 30. 퇴직연금불입액 : 10,000,000

(3) 2006. 12. 30. 회계처리

(차) 퇴 직 급 여 10,000,000^{주)} (대) 현금 및 현금등가물 10,150,000
지 급 수 수 료 150,000

주) 전액 당기 비용처리되어 B/S상에 퇴직급여총당금이 계상되지 않음

(4) 원천징수여부

소득세법상 퇴직에 해당되지 않아 원천징수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3. 자료 III

(1) 2007. 6. 30. A가 퇴사하였고 2007년도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급여해당액은 1,000,000이다.

(차) 퇴 직 급 여 1,000,000 (대) 현금 및 현금등가물 1,000,000^{주)}

주)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시는 14일 이내에 당기분 부담금해당액 1,000,000을 불입하여야 한다.

(2) A가 과세이연을 원할 경우

A가 재입사한 회사의 DC 및 IRA로 이체(입금)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과세이연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3) A가 일시금수령을 원할 경우

① A 퇴사일인 2007. 6. 30. 현재 DC의 A계좌평가금액 2,500,000(승수(주)의 추가불입액 1,000,000 불입전 금액임)

② 퇴직소득해당금액 : 3,500,000(2,500,000 + 1,000,000)

③ 원천세해당액

$$\text{ㄱ. 퇴직소득과세표준} = 3,500,000 - (1,575,000 + 600,000) = 1,325,000$$

$$\text{ㄴ. 산출세액} = \frac{1,325,000}{2} \times 8\% \times 2 = 106,000$$

$$\text{ㄷ. 총원천세액} = 106,000 + 10,600 = 116,600$$

④ 윤종보험(주)는 A에게 원천세를 차감한 3,383,400을 지급한다.

4. 자료 IV

(1) 2007. 12. 31. 현재 퇴직급여추계액

B : 2,000,000

C : 3,000,000

D : 2,000,000 (2006. 4. 1. 입사)

7,000,000

(2) 2007. 12. 31. 퇴직연금불입액 : 7,000,000

(3) 2007. 12. 31. 회계처리

(차) 퇴 직 급 여 7,000,000 (대) 현금 및 현금등가물 7,105,000
지 급 수 수 료 105,000

5. 세무조정

(1) 2006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 기업회계상으로도 비용처리되었으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다.

(2) 2007년

2006년과 동일하게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다.

예제 기존법인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가입시 : 소급가입한 경우

1. 자료 I

- (1) 승수(주)는 1995. 10. 1. 설립된 법인임(회계연도는 1. 1.부터 12. 31.까지 임)
- (2) 승수(주)는 2005년까지 퇴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 (3) 2005년까지 회사의 퇴직급여규정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 (4) 2006년도에 승수(주)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기로 노사합의하였다. 이때 2005년도까지의 퇴직급여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기로 하였다.
- (5) 승수(주)는 연금사업자로 윤종보험(주)를 선정하였다.
- (6) 퇴직연금규약에 퇴직연금부담금은 퇴직급여추계액의 100%를 승수(주)가 윤종보험(주)에 불입하기로 하였다.
- (7) 승수(주)가 부담하는 수수료율은 1.5%이다.

2. 자료 II

(1) 2005. 12. 31. 퇴직급여추계액

근로자	평균임금	근속연수	퇴직급여추계액
A	2,000,000	5	10,000,000
B	3,000,000	6	18,000,000
C	4,000,000	7	28,000,000
			<u>56,000,000</u>

(2) 2005. 12. 31. B/S상 퇴직급여총당금 56,000,000(법인세법상 손금부인액은 34,000,000임)

(3) 2006. 12. 31. 퇴직급여추계액

근로자	평균임금	근속연수	퇴직급여추계액 ^{주)}
A	2,200,000	6	13,200,000
B	3,300,000	7	23,100,000
C	4,400,000	8	35,200,000
			<u>71,500,000</u>

A, B, C에 대한 총급여액은 80,000,000임

주) 2006. 12. 31. 퇴직급여추계액 중 2006년분과 2005년까지의 근속연수해당분

근로자	평균임금	2005년까지분	2006년분
A	2,200,000	2,200,000×5=11,000,000	2,200,000
B	3,300,000	3,300,000×6=19,800,000	3,300,000
C	4,400,000	4,400,000×7=30,800,000	4,400,000
		<u>61,600,000</u>	<u>9,900,000</u>

(4) 2006. 12. 30. 퇴직연금불입액 : 71,500,000(수수료 1,072,500 별도지급)

(차) 퇴직급여충당금 56,000,000^{주)} (대) 현금 및 현금등가물 72,572,500
 퇴직급여 15,500,000
 지급수수료 1,072,500

주) DC제도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에 해당되지 않아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5) B/S상 표시 : 없음

기말현재 퇴직급여추계액 해당액 전액이 DC제도에 가입되어 퇴직연금사업자에 불입되었으므로 회사에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금액은 없게 된다.

(6) DC 가입일이 연도중인 경우

상기 사례에서 퇴직연금불입액이 12. 30이 아닌 연도중인 경우에는 연말에 퇴직급여충당금설정의 회계처리가 발생하게 된다.

① DC가입일이 2006. 6. 30. 인 경우

승수(주)는 2006. 6. 30. 현재의 퇴직급여추계액에 대해 퇴직연금을 불입함

근로자	평균임금	근속연수	퇴직급여추계액
A	2,200,000	5.5	12,100,000
B	3,300,000	6.5	21,450,000
C	4,400,000	7.5	33,000,000
			<u>66,550,000</u>

(차) 퇴직급여충당금 56,000,000 (대) 현금 및 현금등가물 67,548,250
 퇴직급여 10,550,000
 지급수수료 998,250

② 2006. 12. 31. 회계처리

(차) 퇴직급여 4,950,000 (대) 퇴직급여충당금 4,950,000^{주)}

주) 2006. 7. 1.부터 2006. 12. 31.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급여추계액

근로자	평균임금	근속연수	퇴직급여추계액
A	2,200,000	0.5	1,100,000
B	3,300,000	0.5	1,650,000
C	4,400,000	0.5	2,200,000
			<u>4,950,000</u>

3. 자료 III

(1) 2007. 6. 30. B가 퇴사하였고 퇴사당시 B의 평균임금은 3,500,000이고 근속연수는 7.5년이다.

(2) 회사의 추가 부담금액

퇴직일시금해당액 - 전기까지 퇴직연금불입액

$$= 26,250,000^{주1)} - 23,100,000^{주2)}$$

$$= 3,150,000$$

주1) 퇴사일 현재 평균임금 3,500,000 × 근속연수 7.5

$$= 26,250,000$$

주2) 2006. 12. 30. 퇴직연금불입액

(차) 퇴직급여 3,150,000 (대) 현금 및 현금등가물 3,150,000

(3) B가 과세이연을 원할 경우

B가 다른회사의 DC계좌나 본인의 IRA계좌로의 이체(입금)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과세이연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4) B가 일시금수령을 원할 경우

① B 퇴사일인 2007. 6. 30. 현재 DC의 B계좌 평가금액 25,000,000(회사의 추가불입액 3,150,000 불입전 금액임)

② 퇴직소득해당금액 : 28,150,000(25,000,000 + 3,150,000)

③ 원천징수해당액

$$\begin{aligned} \text{ㄱ. 퇴직소득과세표준} &= 28,150,000 - (12,667,500 + 3,000,000) \\ &= 12,482,500 \end{aligned}$$

$$\text{ㄴ. 산출세액} = \frac{12,482,500}{8} \times 8\% \times 8$$

$$= 998,600$$

$$\text{ㄷ. 총원천세액} = 998,600 + 99,860$$

$$= 1,098,460$$

④ 윤종보험(주)는 B에게 원천세 금액을 차감한 27,051,540을 지급한다.

4. 자료 IV

(1) 2007. 12. 31.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

근로자	평균임금	근속연수	퇴직급여추계액
A	2,500,000	1	2,500,000
C	5,000,000	1	5,000,000
D	3,000,000	1	3,000,000
			<u>10,500,000</u>

(2) 2007. 12. 30. 퇴직연금불입액

(차) 퇴 직 급 여 10,500,000 (대) 현금 및 현금등가물 10,657,500
지 급 수 수 료 157,500

5. 세무조정

(1) 2006년(연금불입액이 2006. 12. 30.인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불입하는 부담금은 전액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다. 2006년에 불입한 71,500,000에는 2006년 이전분인 56,000,000과 2006년분인 15,500,000으로 구분되는데 2006년 이전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퇴직급여총당금을 설정하였고 34,000,000이 손금불산입되어 있다. 그러므로 22,000,000은 퇴직급여총당금으로 손금산입된 것이므로 2006년에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부담금을 불입하여도 손금산입되었던 22,000,000을 제외한 34,000,000만 손금으로 추인되는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 손금산입·퇴직급여총당금·34,000,000·유보

2006년분 불입액인 15,500,000에 대하여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며 기업 회계에서도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다.

(2) 2006년(연금불입일이 2006. 6. 30.인 경우)

1) 연금불입시 세무조정

2006년 이전분에 대한 불입액 56,000,000 중 손금불산입되었던 34,000,000에 대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 손금산입·퇴직급여총당금·34,000,000·유보

2) 2006. 12. 31. 설정 퇴직급여총당금에 대한 세무조정

① 2006. 7. 1부터 2006. 12. 31. 까지 지급된 총급여액은 30,000,000임

② 한도액 : $\text{Min}(\neg, \text{ㄴ}) = 1,980,000$

ㄱ. 총급여액 기준

$$30,000,000 \times 1/10 = 3,000,000$$

ㄴ. 추계액 기준

$$4,950,000 \times 40\% - 0 = 1,980,000$$

③ 한도초과액

$$4,950,000 - 1,980,000 = 2,970,000$$

④ 세무조정

손금불산입·퇴직급여총당금·2,970,000·유보

(3) 2007년

연도 중 B 퇴사시 회사가 추가 불입한 연금액 3,150,000과 연말에 불입한

연금액 10,500,000은 전액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되어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다.

예제 퇴직연금의 중단 또는 폐지에 의해 일시금을 받는 경우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내용

- ① 퇴직연금가입후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며 이는 퇴직급여중간정산으로 간주된다.
- ②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는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된다.
- ③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시 중간정산 대상기간의 산정
 - ㄱ. DB에서 수령한 퇴직일시금
 - ㄴ. 중단일 등 시점의 평균임금
 - ㄷ. 중간정산 대상기간
$$\text{ㄱ} \div \text{ㄴ}$$
- ④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시 중간정산 대상기간의 산정
퇴직연금가입일부터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을 납부한 날까지를 중간정산기간으로 한다.

2. DB제도시 중간정산기간 산정시

- (1) 2006. 12. 30. DB제도 가입하여 퇴직연금을 불입함. 이때 2005년까지의 근속연수분에 대한 퇴직급여해당액도 소급가입하기로 하였음
- (2) 2010. 12. 30. 퇴직연금가입을 중단하기로 노사합의함
- (3) 근로자 A에게 지급되는 퇴직일시금해당액 : 60,000,000원
- (4) 2010. 12. 30. 현재 근로자 A의 평균임금해당액 : 5,000,000원
- (5) 중간정산기간 해당연도
$$60,000,000 \div 5,000,000$$
$$= 12\text{년}$$
- (6) 회사에서 근속연수 12년으로 하여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함

3. DC제도시 중간정산기간 산정

- (1) 2006. 12. 30. DC제도에 가입하여 퇴직연금 불입하는데 2005년까지의 근속연수분에 대하여도 전부 퇴직연금가입하기로 노사합의함
- (2) 2010. 12. 30. 퇴직연금가입을 중단하기로 노사합의함
- (3) 근로자 A에게 지급되는 퇴직일시금해당액 : 60,000,000원
- (4) 근로자 A의 입사일 : 2002. 6. 30.
- (5) 근로자 A의 중간정산기간
2002. 6. 30.부터 2010. 12. 30.까지 8년 6개월
- (6) 연금사업자가 근속연수 9년으로 하여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함

1. 자료

- (1) 승수(주)는 2006년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하기로 결정함
- (2) 근로자 김윤경은 2005. 12. 30. 입사자로 승수(주)는 2006. 12. 30.부터 10년간 매년 10,000,000원을 퇴직연금으로 불입하였다.
- (3) 김윤경은 매년 본인부담금으로 5,000,000원씩 퇴직연금에 불입하여 3,000,000원의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
- (4) 퇴직연금규약에 연금신청시 연금수령기간은 10년이다.
- (5) 김윤경은 2016. 12. 30. 퇴사하였고 연금수급요건을 구비하였다. 연금지급 (또는 퇴직일시금지급)개시일 현재 원리금합계액은 250,000,000원이다.
- (6) 연금신청시 10년간 매년 수령할 연금액은 35,000,000원이다.

2.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 (1) 과세대상 연금소득액(총연금액)의 계산

$$\begin{aligned} & \text{연금수령액} \times \left(1 - \frac{\text{근로자가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적액}}{\text{연금개시일 현재 원리금합계액}}\right) \\ &= 35,000,000 \times \left(1 - \frac{20,000,000^{\text{주)}}}{250,000,000}\right) \\ &= 32,200,000\text{원} \end{aligned}$$

주) 근로자 불입금액 50,000,000 - 소득공제받은 금액 30,000,000
= 20,000,000원

- (2) 종합과세여부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초과되므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 (3) 종합소득세신고(기본공제대상자 2인, 표준공제액 600,000원 전제)

① 연금소득	32,200,000
② 연금소득공제	<u>8,120,000</u>
③ 연금소득금액	24,080,000
④ 소득공제	2,600,000
ㄱ. 기본공제	2,000,000
ㄴ. 표준공제	<u>600,000</u>
⑤ 과세표준	21,480,000
⑥ 산출세액	2,751,600
⑦ 기납부세액	1,610,000
32,200,000 × 5% =	1,610,000
⑧ 납부세액	1,141,600

3. 일시금으로 수령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 (1) 과세대상 퇴직소득금액의 계산

$$\text{총수령액} \times \left(1 - \frac{\text{근로자가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적액}}{\text{지급기일내 현재의 원리금합계액}}\right)$$

$$= 250,000,000 \times \left(1 - \frac{20,000,000}{250,000,000}\right)$$

$$= 230,000,000\text{원}$$

(2) 퇴직소득공제 107,500,000

① 정률공제(45%) : 103,500,000

② 근속연수공제 : 4,000,000

(3) 과세표준 122,500,000

(4) 산출세액

$$\frac{122,500,000}{10} \times \text{기본세율} \times 10$$

$$= 11,825,000$$

(5) 주민세

$$11,825,000 \times 10\%$$

$$= 1,182,500$$

(6) 총원천세액 : 13,007,500